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반복 범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 부과기준을 체계 정비, 감경 사유 축소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5. 4.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4. 14.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복 범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 (시행령 별표, 과징금 고시 개정)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지난 5년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위반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부터 가중하였으며, 최대 50%까지만 가중함.

② 부과기준을 체계 정비 (과징금 고시 개정)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 고시는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고,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 (기존) 3단계 부과체계 → (개정) 4단계 부과체계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부과기준을 개정안]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2.0%	1.8%~2.0%
중대한 위반행위	0.8%~1.6%	1.5%~1.8%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0.8%	1.0%~1.5%
		0.1%~1.0%

③ 감경 사유 축소 등 (과징금 고시 개정)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그 외에도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 30%에서 10%로 낮추고, 외부기관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근거를 삭제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붙임> 1.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 반대 · 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4월 14일까지 ①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 반대 · 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 * 팩스: 044-200-4464 * 전자우편: celee032@korea.kr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권순국 (044-200-4405)
	소비자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채은 (044-200-4409)



현행	개정안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2. 과징금의 산정기준 (생략) 가. (생략)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9조제3항제2호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u>100분의 50</u>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 ~ 라. (생략) <신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2. 과징금의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 ----- ----- <u>100분의 100</u> ----- ----- -----. 다. ~ 라. (현행과 같음) 부칙 <대통령령 제 00000호, 2026. 00. 00.> <u>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u>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u>70%</u>
중대한 위반행위	<u>40%</u>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u>10%</u>

2)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u>3억원 이상 5억원 이하</u>
중대한 위반행위	<u>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u>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u>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u>

2. 1차 조정

가. 일반원칙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행위에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생략)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위반사업자등이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중대성의 정도	판단기준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u>2.2 이상</u>	<u>125% 이상 140% 이하</u>
중대한 위반행위	<u>1.6 이상 2.2 미만</u>	<u>105% 이상 125% 미만</u>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u>1.6 미만</u>	<u>70% 이상 105% 미만</u>

2) -----

-----.

중대성의 정도	판단기준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u>2.2 이상</u>	<u>4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u>
중대한 위반행위	<u>1.6 이상 2.2 미만</u>	<u>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u>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u>1.6 미만</u>	<u>5백만원 이상 3억5천만원 미만</u>

2. 1차 조정

가. 일반원칙

----- 100 -----.

나. (현행과 같음)

다. -----

1) ----- 5년간 1회 -----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신 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위 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범위 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범위 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3. 2차 조정

가·나. (생 략)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생 략)

2) 위반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 2점 -----

----- 2회 -----

가)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범위 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

나) --- 5년간 -----

----- 50 초과 100분의 70 -----

다) --- 5년간 -----

----- 70 초과 100분의 90 -----

라) --- 5년간 -----

----- 90 초과 100분의 100 -----

3. 2차 조정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현행과 같음)

2) 위반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u>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 고받은 소비자의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고 그 보 상금액이 1차 조정된 산정기 준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일</u>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u>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 고받은 소비자의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고 그 보 상금액이 1차 조정된 산정기 준의 100분의 50이상일</u>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다)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u>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모두 보상한</u> 경우 : 100분의 20 이 상 100분의 30 이내 3) 조사·심의협조 등 가) 위원회의 <u>조사 단계에서 위 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 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 한</u>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노력의 정도에 의한 감경 가) ----- <u>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보상한</u> --- : ----- --- <삭 제> <삭 제> 3) 조사·심의협조 등 가) ----- <u>조사·심의 단계에 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 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 실을 인정하는</u> 경우(다만, 위 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까지 그 위반행위 를 중지한 경우에 한함) : --- -----
---	--

나)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다만,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까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함) : 100분의 10 이내 4) (생략) 5) 위반사업자등이 외부기관의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100분의 10 이내 6) ~ 8) (생략) 4. (생략) <u><신설></u>	<u><삭제></u> 4) (현행과 같음) <u><삭제></u> 6) ~ 8)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조사·심의협조 감경 취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원처분시에 적용한 IV. 3. 다. 3)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가 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한 경우 나. 위반사업자가 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의 내용이 재판에서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생략)

2.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세부 평가 기준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생략)

중대성의 정도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부과기준금액 (관련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1.8% 이상 2.0% 이하	4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1.5% 이상 1.8% 미만	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3 이상 1.6 미만	1.0% 이상 1.5% 미만	2억5천만원 이상 3억5천만원 미만
	1.3 미만	0.1% 이상 1.0%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

(생략)

중대성의 정도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연간예산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부과기준금액 (연간예산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0 이하	125% 이상 140% 이하	4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2 미만	105% 이상 125% 미만	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이상 1.6 미만	70% 이상 105% 미만	5백만원 이상 3억5천만원 미만

<신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현행과 같음)

2.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세부 평가 기준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

부칙 <제2026-00호, 2026. 00. 00.>

①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